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9

발의연월일: 2026년 9월 16일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찬 성 자 김광성, 남진삼 의원

1. 제안이유

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봉안시설로의 이장을 허용하여 군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여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,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군 봉안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 가족봉안묘에서 봉안시설로 확대함.(안 제10조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8. 10. ~ 8. 14.(의회사무과-3371), 표참고

의회원안	집행부의견(가족복지과)	검토안
제10조(사용자의 자격)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	제10조(사용자의 자격)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(이유) ※ ‘사용자’라 함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, ‘대상자’라는 표현은 단순히 대상이 되는 ‘사람’을 뜻하므로, 각 호 외의 부분만 ‘대상자’로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함. ※ 각 호에는 ‘사람’, ‘사망자’, ‘경우’ 등 다양한 표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, 개정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.	(부분수용)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고자 제10조제7호를 반영하여 앞(분묘)뒤(봉안시설) 순서를 변경함
8.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거나,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이장하여 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.	8.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거나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봉안시설에 안치한 유골을 군 관할구역 안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. (이유) ※ 현행 조례에 따르면,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군 관할구역 안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개정 후 사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,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.	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제8호 본문 중 “외에 소재한”을 “밖에 소재한 봉안시설의 유골을 이장하거나”로,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로서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용자의 자격)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	제10조(사용자의 자격)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. 단,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.	8. --------- 밖에 소재한 봉안시설의 유골을 이장하거나 ---------- 또는 ------ ---------- 경우로서 ----- ---------- ---- <단서 삭제>
9.·10. (생 략)	9.·10. (현행과 같음)

〔관계법령〕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0